

Special Education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Unde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Part B, and the California Education Code

Notice of Procedural Safeguards--Korean

때문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통지서는 18세가 되어 이러한 권리에 대해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도 제공됩니다. 자녀가 특수교육에 의뢰되었고 자녀를 위해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옵션들이 고려되었고 적절히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귀하는 특수교육 평가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특수교육은 출생으로부터 21세 사이의 장애 아동들에게 제공됩니다. 연방 및 주 법은 특수교육 배치 및 서비스 평가와 판별 전체 과정에서 귀하와 자녀를 보호합니다. 장애 아동의 학부모들은 개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그리고 사립 교육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대체 프로그램 가용성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모국어 통지가 명백하게 불가능하지 않는 한, 귀하는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 (예: 수화 또는 브레일 점자)으로 통보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리들은 귀하의 모국어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구두로 통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통지서는 연 1회 또는 (1) 귀하의 요청 시 (2) 자녀를 위한 최초 특수교육 평가 시 (3) 자녀에 대한 재평가 시 (4) 배치 변경으로 이어지는 학교 품행규칙을 위반한 자녀에 대한 퇴학 시 (5) 주정부에 불만제기서 제출 시 (6)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 시,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가용할 경우, 이러한 절차상의 안전장치 사본은 귀하의 교육구 웹사이트에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귀하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의 가능성 여부는 귀하의 지역 교육구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용어 설명은 귀하에게 학부모 권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또는 본 안내서 사용에 관해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거주지 교육구 특수교육부 디렉터에게 연락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전화번호는 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

장애 아동: 장애인 교육법 (“IDEA”)에서 “장애 아동”이란 정신 박약, 농아를 포함하는 청각 장애, 구어 또는 언어 장애, 맹아를 포함하는 시각 장애, 정서 장애, 지체 장애, 자폐증, 뇌 충격 상해, 기타 건강 장애 또는 특수학습 장애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동의: 동의란 (1)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어떠한 활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대화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2) 학부모는 그 활동을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그들이 서명한 동의서에 활동에 대한 설명 및 활동을 시작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공유될 기록 목록 및 기록 공유서가 포함되고 (3) 학부모는 그들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의에 대한 최소가 이미 실행된 조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평가: 자녀의 장애 여부 그리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 56320-56339 조와 미 연방법 타이틀 제 1414 (a), (b) 및 (c) 조에 의거한 다양한 테스트 및 측정을 사용하여 실시된 자녀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교육적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평가 도구는 자녀를 위해 개별적으로 선정되며 지역 교육 기관이 고용한 유능한 전문인에 의해 실시되고, 테스트 및 평가 자료와 절차는 인종 또는 문화적 차별을 배제하도록 선정되고 실시됩니다. 자료 또는 절차들은 명백하게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자녀의 모국어나 대화방식으로 제공되고 실시됩니다.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서 단 하나의 절차만을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FAPE”): (1) 귀하에게 비용 부과 없이 감독 및 지시 하에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며 (2) 캘리포니아 교육부 표준에 부합하며 (3) 자녀에게 교육적 혜택이 되도록 유아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실시될 서면 개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기별 교육 프로그램 (“IEP”): 자녀의 IEP 팀이 수립한 서류에는 최소한 다음의 것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의 학업 성취 및 기능적 수행, (2) 측정 가능한 연 목표, (3) 동년배 아동과 비교하여 자녀가 실행 가능할 정도로 제공 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그리고 보조적 도움 서비스에 대한 언급, (4) 자녀가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설명, (5) IEP 시작일 및 예상 기간, 빈도 그리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장소, 그리고 (6) 적절한 소목표 설정기준, 평가 절차 및 매년 아동의 최소한의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

가장 비제한적 환경 (“LRE”): 적절한 경우,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들과 최대한 함께 교육 받을 것입니다. 자녀가 특수학급, 분리 교육 또는 일반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장애의 본질과 심각성으로 인해 보조적 도움 및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정규학급에서 교육이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지역 교육 기관 (“LEA”):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COE”), 특수교육 지방계획지역 (“SELPA”) 또는 SELPA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차터스쿨을 말합니다.

주요 권리 통보 : 자녀는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받고 주 법에서 무능력자로 결정되지 않는 한, 그가 18세 연령에 달할 때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 하에서 후견인이 없는 성인은 유능력자로 간주합니다.

학부모 : 학부모란 (1)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 (2) 지정된 보호인 또는 후견인이 없는 성인 학생, (3) 조부모, 양부모 또는 아동과 함께 주거하는 그 외의 친척을 포함하여 친부모 또는 입양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4) 대리 부모 (5) 학생을 위해 교육적 의사결정을 할 친부모의 권한이 법원 명령으로 특별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입양 부모를 포함합니다.

교육 기록은 언제,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 공립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 및 후견인들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하에 실시되고 있는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에 의거하여 기록을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교육 기록이란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개인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이를 사용하는 교육구, 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간직하거나 그들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기록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 및 주 법에서는 교육 기록이란 주소 인명 정보 이외에 학교 LEA에 의해 보관되거나 담당 직원이 필기, 인쇄,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또는 다른 수단으로 기록 보존될 것이 요구되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교육 기록에는 교원이 자신 또는 대리인의 사용 목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한 비공식적 개인 메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한 아동 이상의 정보를 포함할 경우, 귀하는 자녀와 관련된 기록 부문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1) 아동의 이름, 학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2) 아동의 주소 (3) 아동의 사회보장번호, 학번 또는 법원기록 번호와 같은 신원 번호 (4) 개인적 특징 또는 합리적 확실성을 갖고 아동을 확인 가능토록 하는 기타 정보 목록

추가적으로, 교육권에 제한은 받지 않지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아동에 대한 신원 증명, 평가 및 교육 배치에 관한 모든 교육 기록 및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FAPE) 규정 검토 (2)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 이러한 권리는 후견인을 두지 않은 18세의 학생 또는 고등학교 이후 학생이 다니는 교육기관에 양도됩니다.

각 학교의 기록 관리인은 교장입니다. 풋힐 셀파에 위치한 각 교육구의 기록 관리인은 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록들은 학교나 교육구에 보관될 수도 있지만 각 장소에서의 서면 기록 요청은 모든 학교로부터의 기록 요청으로 취급됩니다. 기록 관리인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 기록 유형 및 장소에 대한 목록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3년이 지난 후, 특수교육 기록은 폐기됩니다.

기록 관리인은 자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귀하를 비롯하여 최소 16세 이상의 자녀, 기록 검토를 위해 귀하가 허가한 사람, 기록에 대한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가진 교원, 자녀가 지명한 중등교육 후의 교육기관, 그리고 연방, 주정부 및 지방 교육기관 직원으로 제한합니다. 귀하가 기록 공개 동의서를 제공하거나 법정 명령 또는 기타 적용법에 의거하여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 그 외의 모든 경우엔 기록 공개가 거부될 것입니다. LEA는 교육구 직원이 아닌 인물의 기록 접근 시간, 성명 및 목적을 기록하는 일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는 장애인 교육법 (IDEA)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공개되기 전에 다음 정황들을 제외하고는 학부모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1) 과도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불하는 참여 기관 요원에게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전, 그리고 (2) 아동이 학부모가 거주하는 교육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지 않는 사립학교에 등교하거나 등교할 예정인 경우,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 직원과 학부모가 거주하는 교육구 직원들 간에 아동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 되기 전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 기록 검토 및/또는 사본은 요청이 있는 후 5 수업일 안으로 귀하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기록을 찾고 꺼내는 비용이 아닌, 사본에 대한 비용은 LEA 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 교육 기록 접근을 실제적으로 막지 않는 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일단 기록의 완전한 사본이 주어지면, 동일한 기록에 대한 추가 사본들에 대해선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록들이 더 이상 LEA에 필요치 않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귀하는 기록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파괴 또는 기록으로부터 개인 신상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그 정보가 더 이상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LEA는 각 아동에 대한 영구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 (1) 아동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2) 아동의 성적, 출석 기록, 이수 과목, 수료 학년 및 수료 학사년.

귀하께서 LEA가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한 교육 기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믿는 경우, 귀하께서는 서면으로 그 정보 정정을 LE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A가 귀하의 요청에 동의할 경우, 기록은 수정될 것이며 귀하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LEA에서 30일 내로 요구된 정정을 거부할 경우, LEA는 문제의 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 또는 아동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위반 여부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LEA에서는 합리적인 기일 안에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 (1) LEA는 청문회에 앞서 적절한 일시와 장소를 귀하에게 통보하며 (2) 청문회는 LEA 요원을 포함하여 청문회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인사에 의해 실시되며 (3) LEA는 귀하에게 문제들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4) LEA는 청문회가 있는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그들의 결정을 내리며 (5) 그 결정은 청문회에 제출된 증거에만 근거하여야 하며 증거에 대한 요약 및 결정 사유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자신의 부담으로 변호사를 비롯하여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대변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기록 수정 거부가 결정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옳은 기록이라고 믿는 바를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이의제기 기록으로 영구히 첨부될 것이고, 문제가 된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 그 이의제기 진술서도 같이 공개될 것입니다.

독자적 교육 평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독자적 교육 평가 (“IEE”)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교육기관 (LEA)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및 LEA 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자격 평가인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귀하가 LEA에 의해 실시된 최근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만족을 LEA 에

통보하였다면, 귀하는 공공 비용으로 유자격인으로부터 자녀를 위한 IEE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 비용이란 평가에 대한 전체 비용을 공공 기관에서 지불하거나 귀하가 비용을 낼 필요없이 다른 평가 제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IEE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자격 결정을 위한 LEA 기준 정보는 귀하의 LEA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공공의 비용으로 IEE를 요청하는 경우, LEA는 (1) 그들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에게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2) 공공의 비용으로 IEE가 귀하에게 제공되었음이 보증되어야 합니다. 만일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LEA의 평가가 적절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IEE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귀하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개인 비용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 사본을 LEA에 제공한 경우, 그 평가 결과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 규정에 따라 IEP 팀이 신중히 고려할 것입니다. 개인 비용으로 실시된 평가는 자녀에 관한 적법 절차 청문회에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LEA 평가 실시에서 자녀를 관찰하거나 LEA 평가 절차가 학급 내 학생 관찰이 허용되는 경우, IEE를 실시인은 학급 내 자녀 관찰 또는 IEP 팀이 제시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관찰이 또한 허용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 배치를 제안하는 경우, LEA는 제안된 배치를 관찰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일방적으로 학생을 벌써 사립학교에 배치하였다면 배치된 사립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이며 본인은 그것을 언제 받는가 ?

자녀에 대한 신원,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 변경 제안이나 거절이 있을 때마다 LEA는 서면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LEA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러한 제안 또는 거절에 대해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이러한 통지가 학부모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 통지는 학부모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서도 LEA로부터 제공될 것입니다. 본 통지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 LEA가 조치를 제안하였거나 거절한 이유와 함께 그들이 제안하거나 거절된 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고려된 다른 조치들과 그 옵션들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설명.
- 각 평가 절차, 테스트, 기록 또는 LEA가 거절이나 제안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에 대한 설명.
- IEP 팀이 고려하고 있는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 및 그 옵션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 LEA의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
- 학부모는 자녀의 주거지 교육구의 특수교육 디렉터, 셸파 디렉터 또는 세크라멘토의 거주 교육부 (CDE)로 부터 그들의 권리 및 절차상의 안전장치에 대한 사본을 받거나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

학부모 동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요구되나 ?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LEA는 자녀에 대해 평가 및/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LEA는 아동에 대한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를 시작하기 전 고지에 입각한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LEA에서는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적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최초 IEP 배치 및 서비스에 동의하길 거부하는 경우, LEA는 귀하의 승인 거부를 반복하기 위해 하기에 기술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EA가 최초 배치

및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LEA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FAPE) 제공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EA의 요청이 있는 후 이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LEA는 IEP 팀 모임 소집이나 IEP 수립 또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자녀 IEP의 어떤 부분에 대한 수용을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이 부분들은 LEA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녀 IEP에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이 아동을 위한 적절한 무상교육 제공에서 필요한 것으로 LEA가 판단하는 경우, LEA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LEA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귀하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다면 고지에 입각한 귀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최초의 동의가 있는 후 언제라도 아동의 부모는 교육구나 차터 스쿨에 서면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구절에 대한 동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중지되기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합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중재 절차나 적법 절차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더 이상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에게 가용한 적절한 무상교육 제공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아동을 위한 더 이상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구절을 위해 IEP 팀 모임 소집 또는 IEP 수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최초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학부모가 서면으로 특수교육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나 차터 스쿨에서는 동의 취소 때문에 아동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언급 삭제를 위해 학생의 교육 기록 수정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모든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모든 서비스가 아닌 일부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 프로그램이 더 이상 불만이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귀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고 해결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려가 있다면, 풋힐 셀파는 교사, 학교 행정관 또는 자녀 IEP 팀이 귀하의 우려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을 장려합니다.

LEA가 귀하의 우려를 비공식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귀하는 LEA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 비존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우려점이 장애아 판별 평가 또는 교육배치의 개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 자녀에 대한 FAPE 규정 또는 자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가용성에 대한 분쟁과 관련되는 경우, 귀하는 불만제기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기 참조). LEA 역시 자녀의 장애 판별 평가 또는 교육배치의 개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이나 거부, 자녀에 대한 FAPE 규정 또는 자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가용성에 대한 분쟁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불만제기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준수 불만 제기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장애인 교육법 또는 캘리포니아 특수교육법 하에 위법이라고 주장되는 모든 비준수 불만 제기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서면으로 작성되고 (2) LEA가 장애인 교육법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상응하는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진술이 포함되고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포함되고 (4) 소송인의 서명 및 연락처 그리고 (5) 한 아동에 반하여 위반이 된다는 주장에는 (a) 아동의 이름과 주소 (무주택자 아동에 대해선 가능한 접촉인 정보) (b) 아동이 등교하는 학교명 (c) 문제의 성질 및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설명 (d)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해결책 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구 / LEA 차원에서의 비준수 불만 제기: 뜻할 셀팍는 LEA가 귀하의 우려점을 비공식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하도록 특수교육 문제와 관련된 불만을 귀하의 LEA에 직접 제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LEA는 이러한 불만 제기에 대한 비밀 보장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귀하의 불만을 시의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귀하를 만나서 어떠한 우려점도 해결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준수관은 교육구 및 그 직원 또는 계약인 그리고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준수관은 또한 불만제기서 작성에 귀하를 도우며 법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준수관은 적절한 경우 불만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기타 기관을 귀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주정부 단위의 준수 요청 소장: 어떠한 개인 또는 기구도 LEA,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한 장애인 교육법이나 주법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준수요청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수 확인 담당 직원은 서면 소장 작성에 귀하를 도울 수 있으며 법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준수 확인 담당 직원은 적절한 경우 불만 조사 및 해결에 책임이 있는 기타 기관을 귀하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불만제기서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준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Division,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1430 N Street, Suit 2401, Sacramento, CA 95814 전화 (800) 926-0648, 팩스 (916) 327-3704**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에 제출하는 비준수 불만제기서에는 불만의 근원이 되는 사실들을 귀하가 알거나 알 이유를 갖게 된 날짜로부터 **일** 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만제기서, 접수 후 60 일 이내로 CDE는 (1) 필요시 독자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2)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귀하에게 불만제기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불만 해결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불만제기서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LEA에 제공합니다 (4) 모든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고 LEA의 장애인 교육법 및/또는 관련 주법 요건 위반 여부에 대해 독자적 결정을 합니다 (6) 소장의 각 주장에 대해 다루고 발견점과 결론 그리고 최종 결정 사유가 포함된 판정서를 귀하 및 LEA에 전달합니다.

중재란 무엇이며 본인은 언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나?

당사자들은 적법절차 청문회 신청 이전에 중재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 (“ADR”) 과 같은 덜 적대적인 절차를 통하여 특수교육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됩니다. 비록 귀하는 중재를 받도록 권고되지만 이것은 적법절차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청문회 전 이러한 자발적인 중재 모임은 아동의 장애 판별, 평가, 교육 배치, 또는 FAPE 규정과 관련된 문제를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수준의 해결을 위해 비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나 법적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인사들은 청문회 전의 중재 모임에 참석 또는 달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 당사자들이 중재 과정 이전이나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막는 것은 아니며 관련 아동의 부모가 변호사인 경우 그 부모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자유재량으로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동반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모임은 양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CDE가 귀하의 중재 요청 접수 후 15일 내로 날짜를 정하고 30일 내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중재는 효율적인 중재 방법을 훈련 받았으며 공정한 유자격 중재관에 의하여 실시될 것입니다.

귀하와 LEA가 중재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해결 방안이 공표된 후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중재 과정 동안의 모든 논의는 비밀로 유지되고 차후에 있을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귀하 및 LEA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권한을 갖는 대리인 모두가 서명한다.

서명한 중재 합의서는 주 관할 법원 (주법 하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 심리 권한을 가진 법원) 또는 미 연방 지법 어느 곳에서도 집행됩니다. 중재 과정 동안의 모든 논의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차후에 어떠한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연방이나 주 법정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적법절차 청문회란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공식 절차로 이것은 법정 소송과 유사한 것입니다. 청문회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판별 평가 또는 교육배치의 개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이나 거절, 자녀에 대한 FAPE 제공 또는 자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가용성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귀하나 LEA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요청서는 **다음의 주소,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n: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 200, Sacramento, CA 95833 - 4231. 전화 (916) 263-0880, 팩스 (916) 263-0890**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는 청문회 요청의 근원이 되는 사실들을 귀하가 알거나 알 이유를 갖게 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거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못한 경우, 이러한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 요청의 근원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LEA가 허위로 보고하였거나 (2) 본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를 LEA가 귀하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귀하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만** 합니다: (1) 자녀의 이름 (2) 자녀의 주소 (또는, 무주택자 아동의 경우 연락처 정보) (3) 자녀가 등교하는 학교명 (4)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여 제안된 서비스 시작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 (5) 귀하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된 해결책. 귀하는 적법절차 요청서 사본을 LEA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귀하 (또는 LEA는) 상기에 기술한 모든 정보들이 포함된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적법절차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OAH는 5일 내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가 상기에 기술한 적법절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결정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경우 서면으로 귀하 및 LEA에 통보할 것입니다. OAH가 적법절차 요청서가 불충분하다고 결정할 경우, 요청인은 상기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요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경우, 적법절차 요청서를 받은지 15일 이내로 LEA는 제기된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귀하, 적법절차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갖고 있는 자녀의 IEP 팀 멤버,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LEA 대리인과 함께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모임에는 귀하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LEA 변호사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귀하 및 LEA 모두가 서면으로 문제 해결절차 또는 중재 사용 포기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 해결 모임에 대한 귀하의 귀석은 귀하가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문제 해결절차 및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지연됩니다.

문제해결 모임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그 합의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귀하 및 LEA 대리인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서명 후, 귀하 및 LEA 모두는 합의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3 업무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LEA가 적법절차 요청서를 접수하고 30일 이내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 동안) 귀하가 만족스럽도록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가 열릴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을 위한 적절한 일정이 계획됩니다.

귀하 및 LEA는 적법절차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어느 때라도 분쟁 중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중재관은 양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함이 없이 OAH를 지명합니다. 중재관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OAH의 시간을 연장하지만 청문회 또는 다른 권리들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요청의 원인이 된 문제들이 해결 모임 또는 중재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경우, OAH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문제 해결 종료 후 45일 내로 당사자들에게 결정 사본을 우송하여야 합니다. 청문회는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 (1) 특수교육 및 행정 청문회 관장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청문회를 가질 권리 (2) 변호사 또는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대변될 권리 (3) 증거, 서면 및 구두 논거를 제출할 권리 (4) 데질, 반대 심문 및 증인 출두를 요청할 권리 (5) 청문회에 대한 서면 기록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녹취 기록을 받을 권리 (6) 문제 해결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로 사실에 대한 판정 및 결정을 서면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녹취 기록을 받을 권리 (7) 청문회에 앞서 최소 10 근무일 전에 상대방이 변호인에 의해 대변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을 권리 (8) 청문회에 앞서 최소 10 근무일 전에 상대방의 주장 및 제안된 해결안을 통보 받을 권리 (9) 청문회에 앞서 최소 5 근무일 전 당시까지 완료된 평가 및 권고안, 증인 명단과 증인의 일반적 부분을 포함하는 모든 서류 사본을 받을 권리 (10) 청문회에 아동을 출석시킬 권리 (11) 청문회 공개 및 비공개에 대한 권리 (12) 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 (13) 정당한 사유로 청문회 일정 연장을 요청할 권리 (14) 장애아들을 위해 법적 서비스나 후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명단 제공을 자녀 교육구, 풋힐 셉파나 OAH에 요청할 권리.

법적절차 청문회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청문회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양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적절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기록 및 필사본은 민사 소송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법정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를 청취할 수 있으며 상세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항소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절차 청문회 서류 중 본인의 아이는 어디에 배치되는가?

일단 법적절차 요청이 LEA에 접수되면, 문제해결 기간 동안 그리고 공정한 법적절차 청문회 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아동은 학부모 및 LEA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현 교육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이 공립학교 최초 입학 신청과 관계되는 경우, 귀하의 동의와 함께 자너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이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에 의거한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을 위한 최초 서비스 신청과 관계되고 아동이 3살이 되었다면, LEA는 자너가 받았던 IFS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자너가 LEA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귀하가 자너를 처음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동의하고 나서 적법절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LEA는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귀하와 LEA가 동의하는 부분)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너가 대체적 임시 교육 환경 (“IAES”)에 배치되었다면, 자너는 적법절차 청문회 서류 중 최대 45일 동안 또는 IAES의 기간 종료 가운데 먼저 발생하는 날 까지 IAES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어떤 경우에 상환되는가?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학부모가 이기는 경우, 법정은 법정 제량으로 장애아 부모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LEA에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찮고 부당하거나 근거없는 소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 또는 소송이 명백하게 하찮고, 부당하거나 근거없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나 학부모의 변호사에게는 LEA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소송장 또는 후속 소인이 괴롭히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기 위해서, 또는 쓸데없이 소송 비용을 늘이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LEA는 학부모 또는 학부모의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 (LEA 역시 절차를 지연시켰거나 적법절차 과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2) 비용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부당하게 초과한 경우 (3) 소요 시간 및 법적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4) 또는 학부모 변호사가 LEA에 적절한 적법절차 요청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는 LEA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거절 또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 또는 법정 공방이 있기 전 10일 이상의 어느 시기에 청문관 또는 법정이 학부모가 받을 최종 보상금이 합의에서 제공한 금액보다 적다고 판정하는 경우, 추가적 변호사 수임료 또는 비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하고 법정이 귀하의 합의안 거절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EP 모임이 행정 절차 또는 사법 조치의 결과로 소집된 것이 아닌 이상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료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모임은 행정 청문회 또는 법정 공방의 결과로 소집된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또한 변호사 수임료 규정상 행정 청문회 또는 법정 공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EA가 본인 아이에게 훈육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본인 아이의 권리는 무엇인가?

장애아동이 10일을 초과하거나 누적 10일이 초과되는 정학을 받고 그러한 정학이 배치 변경을 가져올 경우, LEA는 정학 조치를 취하기 전에 훈육조치를 요구하는 자녀의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EP 모임을 소집하여야 합니다. IEP 팀은 문제의 행동이 다음과 연관되었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1) 문제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부터 연유되었거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가 또는 (2) LEA에서 아동의 IEP 실시 실패의 직접적 결과인가. 특별한 정황 하에서, 자녀는 45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IAES 로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학교 교원들이 자녀의 위법 행위를 해당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정학 또는 퇴학 결정에 이의신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아동에 대한 훈육 조치적 배치 또는 현행 결정 모임의 결과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LEA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주정부는 청문회를 요청한 날짜로부터 20 수업일 이내로 실시될 신속한 청문회를 정해야 하며 청문회가 있는 후 10 수업일 이내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의신청 동안에 자녀는 배치에 머무를 자격이 주어지지만, 자녀가 45 수업일 동안 IAES 에 배치되어 있다면 배치는 청문관의 결정이 계류중인 있을 때까지 또는 정학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 어느 것이라도 먼저 발생할 때까지 그 배치에 남아 있습니다.

훈육 조치가 계류중일 때 아동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면, 그 평가는 신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같은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아동은 학교 당국이 결정하는 교육배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이전에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LEA가 그 아동이 훈육조치의 원인이 된 그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알고 있었다면 장애인 교육법 하에 마련된 보호 조항의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학부모가 서면으로 아동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구 감독관이나 행정 요원 또는 아동의 교사에게 표명하였을 경우 (2) 학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을 경우 또는 (3) 교원이 아동의 행동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점을 LEA 의 특수교육 디렉터 또는 기타 감독 요원에게 표명한 경우. 학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허가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하였거나 아동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었으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 LEA는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LEA가 장애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아동은 장애인 교육법의 적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아이가 잠정적 대체 교육환경이 배치되는 경우의 절차는 무엇인가?

IAES 란 교원에 의해 10 수업일 (대체 배치가 비장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한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처해질 수 있는 교육 배치, 기타 환경 배치 또는 정착을 뜻합니다. 아동에 대한 IAES 배치 결정은 LEA 에 의해 혼육조치가 검토될 때 IEP 팀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별한 정황 하에서, IAES는 아동이 학교, 학교 구내 또는 주정부 및 LEA 관할권 하의 학교에서 다음의 위법사항 중 하나를 저지를 때 45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무기 소유나 소지 (2) 불법 마약류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사용했거나 통제 물질을 판매 또는 판매 요구 (3) 타인에 대한 심각한 신체 상해. 아동을 45 수업일간 IAES 에 배치한 후 LEA가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경우, LEA는 기능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중제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같은 중제안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경우, IEP 팀은 IAES 가 아동이 일반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IEP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위법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조정을 제공하며 IEP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여 그 서비스 및 조정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방법 하에서, 청문관은 장애아동을 그가 원래 있었던 배치로 돌려보내거나, 청문관이 그 아동의 현 배치 유지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45 수업일 이하 동안 장애아동을 적절한 IAES로 배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IAES 배치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부모는 결정을 통보 받고 장애인 교육법의 혼육 조항 하의 모든 절차상의 안전장치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IAES 배치가 10 수업일을 초과할 경우, IEP 팀은 자녀가 교육적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적절한 배치 및 서비스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아이를 사립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본인의 결정과 관련된 규칙은 무엇인가?

자녀를 사립학교 또는 기관 배치 비용 상환은 청문관 또는 법정이 LEA가 아동에게 사립학교 등록 이전에 제 때에 맞춰 FAPE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할 때 명령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최근의 IEP에서 제안된 배치를 거부할 것이며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아동을 공립학교로부터 퇴고시키기 최소 10 수업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면 상환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공립학교로부터 퇴고시키기 전에 LEA가 아동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를 학부모에게 통보하였고 학부모는 이 평가를 거부하였거나 아동을 평가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상환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LEA가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가 “서면 통지” 요건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통지 요건 준수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환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영어를 모르거나 읽고 쓸 수 없다면 또는 통지 요건 준수가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환금은 삭감될 수도 삭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립 특수 학교란 무엇인가?

주립 특수 학교에서는 농아, 청력에서의 어려움, 맹아, 시각 장애 또는 농-맹아 학생들에게 다음의 3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remont 및 Riverside 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농아학교 그리고 Fremont 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맹아학교. 주거 및 주간 학교 프로그램이 양 주립 학교에서 유아로부터 21세까지의 농아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캘리포니아 맹아 학교에서는 5세부터 21세까지의 맹아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립 특수 학교에서는 평가 서비스 및 테크닉 지원 역시 제공합니다. 주립 특수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주 교육부 웹 사이트 <http://www.cde.gov/sp/ss/>를 방문하시거나 자녀의 IEP 팀 멤버 또는 셸파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데리 부모는 어떠한 정황 속에서 아동에게 지정되는가?

아동이 데리 부모가 필요하다는 LEA의 결정이 있는 지 30일 내로, LEA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을 위해 데리 부모를 지정할 것입니다:

1. 아동은 법원의 부양인 또는 피보호인이며, 법정은 아동을 위한 교육적 결정에 부모 또는 보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였고 **그리고** 아동은 그를 대변할 책임있는 부모 또는 보호인을 갖고 있지 않다, 또는
2. 아동은 법원의 피보호인 또는 부양인이 아니며, **그리고** 학부모나 보호인이 행방불명이고,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아동은 동반자가 없는 무주택 청년이다.

아동을 위한 데리 부모의 역할을 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 LEA는 친척으로서 돌보는 사람, 양육 부모, 만일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경우, 법정에서 지정한 특별 후원자를 고려하게 되며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데리 부모는 아동을 적절히 대변할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며, 아동과 최소 한 번은 만나봐야 하며, 그같은 사람이 가용하는 한 아동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하여야 합니다. 데리 부모는 장애판정, 평가, 교육 계획 및 목표 수립, 교육 배치, IEP 검토 및 개정 그리고 비 응급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치료 서비스와 작업 및 물리 치료 서비스에 대한 IEP 동의서 제공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FAPE 규정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들과 관련된 사안들에서 아동을 대변하여야 합니다.

아동을 대변하는 데 있어 이해상충이 있는 사람은 데리 부모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데리 부모가 아동의 교육 또는 돌보는 것과 관련된 LEA 직원이거나 그의 주 수입원이 아동이나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입양 양육자일 경우, 이해상충이 존재합니다. 이같은 상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양 양육자, 퇴직 교사, 사회 복지사 및 보호 관찰관 등은 모두 데리 부모로서 모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무주택 청년인 경우, 비상 및 임시 데피소, 독립 생활 프로그램, 가두 선도 프로그램 요원들은 상기에 기술된 이해 상충과 관계 없이 앞에서 기술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데리 부모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임시 데리 부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데리 부모가 상기 기술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아동 보호를 감독하는 (LEA가 아닌) 판사에 의해 데리 부모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